

수의사 연수교육에 따른 세론(世論)

조명래

인간교육의 목적은 지덕체(智德體)의 함양에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지능의 개발과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품성과 덕성을 길러 인격을 도야하고 튼튼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에 평생교육(생애교육)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수의사의 연수교육도 전문인으로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연수교육의 목적이 수의사법에는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의 내용이 최신의 학설(이론)과 기술을 익히는 智育과 수의사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도덕에 중심한 德育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동물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體育으로 구성되면 만족스러운 연수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수의사 연수교육실시에 따른 회원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편소리가 있기에 그들을 둘어서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축산의 불황으로 인한 축주의 위축경영과 투자 그리고 자가치료의 증가에 따라 대동물 임상수의사는 사전에도 없는 명퇴(名退)를 준비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와 과다한 병원수로 인하여 소동물 임상수의사는 '철새'의 심정에 있음을 연수교육위원회는 감안하기 바란다.

근거법령 해설

대부분의 임상수의사들은 연수교육의 통지공문에

* 갈촌동물병원/경기도지회 부회장겸 학술위원장

서 수의사법 제34조 및 제32조, 수의사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연수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만약 위반할 때는 행정처분으로 면허효력정지(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가 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부 임상수의사들은 연수교육이수를 귀찮아하고 배울 마음보다 불이익을 당하기가 싫어서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일 먼저 법규의 문구(文句)의 적합성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알아 보자.

1) 연수교육이란 표현문제

연수(研修)란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특별한 공부를 하는 일'로 사원연수를 예로 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혼하들 연수교육이란 모든 직장의 신입사원이 그 직장의 특성에 맞게 수개월 이상씩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인의 예로 사법연수교육이 있다. 20여년전에는 '수의사 재교육'이란 말로 수의사들의 분통을 터트린 적이 있다가 '수의사 보수교육'으로 바뀌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수교육(補修教育)·보습교육(補習教育)이란 이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수준을 더 높이기 위하여 베푸는 교육'이란 뜻을 가진 말로 제일 적합한 것 같다.

2) 연수교육의 목적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제1항에 보면 연수교육의 목적이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자질(資質)이란 낱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좋지

않은 곳에 자주 사용되므로 알맞은 말로 고쳐야 하겠다.

3) 교육대상자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제2항에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계 종사하는 수의사'로 되어 있다.

수의사법 제17조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라 함은 개업수의사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일반기업에서 A/S수의사로 동물진료를 행하고 있는 경우와 실습중인 수의사, 동물병원의 개설명의(名義)는 개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명이 동업하는 경우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연수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처음으로 개업한 수의사와 고령인 개업수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어야 하겠다.

4) 행정처분의 기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에 보면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효력정지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실례로 입원가료중인 사람, 구속중인 자, 장기간 해외연수중이거나 여행중인 자 또는 연수교육이 있을 때마다 집안의 길흉사가 겹친 수의사 등등으로 명확하게 범위

를 확정지어야 한다.

면허효력정지란 뜻은 영업정지를 포함한 말인가? 영업정지가 아니라면 수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습생이 있거나 여러명이 있는 동물병원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5시간만 이수하였을 때는 행정처분 1차 면허효력정지 3개월의 반인 1.5개월 또는 2개월의 면허효력정지를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다 받게 되는가?

5) 연수교육계획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 5항에 보면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연수교육 계획은 표 1과 같다.

실제적으로 연수교육계획은 농림부의 보고용이지만 반드시 계획안대로 수행할 의무도 없으며, 각 지부와 협의할 때는 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구체적으로 대·소동물별 교과내용의 연제(演題)와 함께 강사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각 지부도 총회개최전에 별도로 중복되지 않게 연수교육계획을 세워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교육 이수시간 인정은 95년도엔 중앙회와 각 지부의 교육이 각각 5시간이 인정되고 연수교육위원회

표 1. 수의사 연수교육계획의 연차별 변경사항

교육실시 기관 및 단체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안)	
	교육 1회 참가에 따른 이수시간 인정 및 의무교육의 구분		교육 1회 참가에 따른 연수시간 인정 및 의무교육의 구분		교육 1회 참가에 따른 연수시간 인정 및 의무교육의 구분	
대한수의사회(중앙회) (1)수의사 연수교육	[전국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 소동물(1회) 대동물(1회)	5(5) ☒	[전국을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 소동물(1회) 대동물(1회)	5(5) ☒	중앙회와 각부별로 연2일간 합동으로 연계교육	10 ☐
(2)한미합동 세미나	소동물(1회)	5 ☐	소동물(1회) 대동물(1회)	5(5) ☒		
각 시·도·지부의 수의사 연수교육	1회	5(5) ☒	1회	5(5) ☒		
연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 학술단체 및 관련업체	1회	3(5) ☒	1회	5(5) ☒	1회	5(5) ☐
관 또는 민간단체의 학술행사	1회	3(5) ☒	1회	5(5) ☐	1회	5(5) ☐

인정하는 학술회의 교육은 3시간만 인정되었으나 96년도부터는 모두 5시간으로 인정된 것은 잘 된 일이다.

그러나 95년도엔 중앙회의 교육이 선택교육이었지만 96년부터는 필수교육으로 바뀐 것을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며 각 지부별 계획에 크나큰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아니라 각 지부에서 연수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주는 폐단을 놓고 있다. 그러므로 필수교육은 각 지부별 연수교육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국고지원(보조)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96년도 중앙회 국고보조액은 4,000만원이었으며 97년에도 정부보조금으로 같은 액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 보조금 때문에 각 지부별 연수교육의 활성화가 지연된다면 책임은 당연히 중앙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부별로 연계하여 중앙회가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산출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훌륭한 연수교육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각 지부도 연수교육계획을 세워 시·도청의 축산과에 제출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배당받아 연수교육의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늦었고 긴축재정으로 추경예산편성도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부의 회장 및 학술위원회는 지금 당장 관의 책임자와 상의하여 보조금의 지

원여부를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보조금을 타서 더욱 알찬 교육계획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회원들의 불평

수의사 연수교육은 교육(education), 교수(instruction)가 아니라 일정기간에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는 특정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교육의 뜻을 가진 훈련(training)이다. 그래서 학술발표회보다는 오히려 세미나(seminar)를 통한 토론, 심포지엄(symposium)개최에 따른 질의응답 그리고 워크숍(workshop) 등에 직접 참가하여 교육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수의사들은 '진료건수도 없는데 무슨 교육이냐?'하면서 참석은 했지만 참여하지 않고 걸들기만 한다. 개인의 사정에 맞게 각 지부에서 연수교육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세웠다하더라도 불평·불만의 소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차기 연수교육계획에 한가지라도 반영하여 회원들의 불평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1) 연수교육실시에 갈음하는 단체

대한수의사회 연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 학술단체 및 관련업체는 표 2에 나와 있다. 그 내용을 보고나면 각 학회, 연구회 및 임상수의사회에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인정해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상수의사가 전혀 참석하지 않거나 극소수

표 2. 연수교육위원회(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학회, 학술단체 및 관련업체

구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학회 및 학술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수의학회 · 한국임상수의학회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 한국실험동물학회 · 한국가축위생학회 · 한국수정란이식학회 ·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 · 한국유질유방염연구회 · 한국수의침구학연구회 · 한국소동물병원협의회 · 서울우유임상연구회 · 부산시임상수의사회 	<p>(왼쪽과 같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의병리학회 · 한국우병학회 	<p>(왼쪽과 같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임상수의학회 · 양돈산학연구회 <p>* 각종 국제수의학술대회</p>
관 또는 민간단체	축협중앙회 (수정란 제조 및 이식교육)	(왼쪽과 같음)	(왼쪽과 같음) · 수의의료장비 및 약품판매업체의 세미나 ※ 10개 수의학과(특수동물) 위탁교육

만 참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부의 임상수의사회를 인정해주다 보면 모든 지부의 임상수의사회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주체 및 주관이 같으면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한 번의 교육을 받고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모두 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도 대한임상수의사회를 발족하여 1회 교육참가로 연수교육 이수 시간 10시간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발기하고 창립하여 연2회 인상 연구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이 있을 경우 인정해야 되며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부와 학회가 공동개최할 때도 선택·필수교육 중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

차라리 연수교육위원회가 각 지부 학술위원회에 선택시간 5시간의 인정권을 위임하기 바란다. 그러면 각 지부별 큰 행사가 들어가는 총회, 단합대회(아유희 및 체육대회)에 각각 3시간을 인정하여 참석율을 높여 수의사라는 하나의 공동체인식을 드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분회별로 강사를 초청하여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2) 연수교육 참여실태

연수교육의 참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의 시간대별 참가자수를 살펴보자. 교육시작전에 참석한 평균비율은 20% 정도다. 심지어 오후 1시이후에 참석한 사람도 3%를 차지한다. 여기서 늦게라도 참석만 하면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는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하기야 참석했어도 강의실 밖에서 잡담으로 소일하는 사람, 강의실에서 잠만 자는 사람, 왔다가 등록을 마친 다음 눈치보아 아예 가버리는 사람, 일단 갔다가 끝날쯤 수료증(이수증)을 받기 위해 다시 오는 사람, 대리등록(이중등록)을 감행하는 사람 등등이 있으니, 늦게 왔어도 남은 시간동안 착실히 교육에 임하는 수의사에게 오히려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경기도수의사회는 1차(소동물임상), 2차(대동물임상) 교육실시에 참석하지 못한 수의사를 위해 95년도엔 보충교육과 정신교육실시로 그들을 구제하였고, 96년도엔 타 지부에 위탁하여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나 5명이 이수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들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구제용 교육)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3) 연수교육의 연제선정

지난 2년간 대한수의사회지에 실린 연수교육의 연제를 발췌해 보면(표 3), 과목에서 일반, 행정, 기초 및 예방이 임상과목과 연제수에서 거의 같았다. 금년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중 과목배정은 수의기초과목(20%), 수의예방의학과목(30%) 그리고 수의임상과목(50%)으로 되어 있다.

대·소동물 이외의 임상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의 연수교육은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각 지부별로 실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지금은 초기단계라 그래도 연재를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연재선정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표 3의 연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이 별색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회는 앞으로 연제 및 강사의 소개에 주력하면서 연제의 중복을 막는데 교통정리를 해주었으면 한다. 특별히 해외동포 수의사로서 고국을 방문하는 경우 그 정보를 각 지부로 알리고 가능한 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섭외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수의분야가 아닌 인생, 건강,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도 유명인사를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상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이다.

4) 연수교육의 일자(요일)와 장소선정

금년도 연수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서는 소동물의 임상교육은 주중을 피하고 대동물의 임상교육은 여름철을 가급적 피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요일은 학교나 관공서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의과대학을 빌릴 수 없을 때는 임상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요일은 주일이다, 쉬는 날이다, 결혼식에 가는 날이다 하며 싫어하기도 한다.

행정구역상 장소가 멀어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는 회원들에게 생활권상 인근지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지역별로 여러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 대한수의사회지에 발표된 수의사 연수교육의 연제발췌

(1) 1995년도의 연제

과 목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 그리고 학회 및 학술단체의 연제	
일반 및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과학의 세계화 · 동물약품판매에 관한 수의사의 자세 · 수의관련 법령해설과 우리의 자세 · 세법상식과 개정수의사법 · 개정 약사법 및 수의사법 해설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임시 세무유의사항 · 축산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 축산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보건 GATT, UR의 SPS협정과 대응방안 · HACCP제도의 도입과 대응방안 · 수의행정 및 연구기능의 활성화 방안
기초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안전우유 생산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 우군관리 및 집합유관리를 통한 체세포수 감소방안 · 안전식육 공급대책 · 식육위생관리 및 검사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 식육내 유해잔류물질의 현황과 대책 · 도축장 시설의 현황과 대책 · 첨단기법을 이용한 산업동물에서의 질병방제 · 돼지질병의 발생동향과 대책 · 가금질병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병진단의 개요 · 백신 프로그램 · 소동물 소화기의 해부와 생리 · 젖소의 분만을 전후한 생리기능의 변화 · 동물약품의 개발방향과 평가 · BST의 개발과 응용 · 수의학에서 전생물기관학(前生物器官學 : Probiotics)의 새로운 발전 · 돼지질병에 효과적인 백신의 최신 연구법 · 수의학에서 비특이적 자극물의 최근 개발
소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동물의 치과질환과 진단의 치료 · 체계적인 예방치과 · 치과기구 · 치주질환의 외과수술 · 빈혈·혈변을 주 징으로 하는 개의 질병 · 소동물의 임상 · 소동물의 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동물의 피부질환대책 · 개의 장질환 · 소동물의 임상진단 및 치료 예 · 탈구의 외과적 치치 · 소동물의 설사 · 마취시 모니터법 · 기초 수의안과학
소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동물 초음파진단 실제 세미나 · 소동물의 외과수술(단이·제왕절개·거세 및 무성수술) · 개의 제왕절개술 · 개와 고양이의 소화기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동물 임상증례 24종의 진단 및 치료방법 · 골절처치 워크숍 · 수의임상에 있어서 관절경의 이용 · 소동물임상의 응급시 침술례
임상	대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수정란의 채취 · 소의 파행증 · 산업동물의 침구요법 · 소의 침구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타일레리아증 · BST의 임상적 이용 · 기립불능우에 대한 전침요법의 효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서 발생 가능한 몇 가지 유독식물을 포함한 가축 중독증 발현기전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 임상에서 생약(약초)의 응용 · 돼지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 및 대증요법에 대하여

(2) 1996년도 연제

과 목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 그리고 학회 및 학술단체의 연제
일반 및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과학의 세계화 · 수의사 보조원 양성화 제도방안 · 가축위생시험소의 발전방향 · 수의정책방안 · 수의무행정책세법 · 수의축산정책 · 동유럽국가의 수의학교육의 현황 · 동물의과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전망 · 6년제 수의과대학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수의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 캐나다 수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 미국 수의학교육의 21세기 전략 · 6년제 수의학교육 교과과정편성의 방향 · 축산물생산에서 HACCP 제도의 현장 적용전략 낙농분야의 HACCP 제도의 현장 적용전략 양돈분야의 HACCP 제도의 현장 적용전략 양계분야의 HACCP 제도의 현장 적용전략 · 일본의 방사선 진단기술 개발의 현재와 미래
기초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균(O-157, H7)의 공중보건학적 의의 및 수의사의 역할 · 쇠육의 병리검사 · 클라미디아 감염증의 진단과 방역 · 가축의 체액과 산·염기평형 · 살모넬라균증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박멸대책의 추진방향 돼지의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의 관리요령 살모넬라 오염방지 방안 축산물 안정성 강화대책 추진시책 축산물 검사에서 수의사의 역할 · 한우 고환에 분포하는 신물질 Angiogenin의 규명 · 동물용 백신의 작용원리와 사용법
임상	소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순환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개사상충증의 예방·진단 및 치료 국내 개사상충증의 발병현황과 대책 · 백신관리와 예방접종 · 개의 대퇴골절에서 골수강에 편을 이용한 치료실습 · 소동물 마취의 고찰 · 애견의 영양과 식품 · 가스흡입마취의 방법 및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및 비뇨기의 질환과 치료 · 고관절이형성 사례의 삼중골반골절술 · 신장질환의 접근 · 개의 변식장애와 대책 · 소동물임상에서의 초음파이용 · 방사선학(X-선의 안정성·정상 및 비정상소견, 조영법) · 슬라이드교육(일반골절의 방사선소견 및 처치) · 신생자견의 수액요법
	대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동물의 내·외·산과 진단을 위한 초음파 진단 기의 활용 · 초음파를 이용한 대동물 변식장애 진단방법 ·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젖소의 간질환 진단 ·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우의 복부·생식기 질병 및 임신 진단기법 · 일본에 있어서 젖소 유방염방지에 대한 견해와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염의 오존 치료법 · 젖소의 난소와 자궁의 질환과 말의 주요질환 · 젖소의 유방염과 대책 · 송아지의 설사 및 그 대책 · 송아지의 호흡기질환 및 그 대책 · 대동물의 수술기법 · 수정란이식에 의한 쌍태송아지 생산기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슴의 사양관리와 질병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과 충류의 질병과 사양관리

5) 기타

등록시 수의사회 직원이 면허번호를 물으면 모르는 회원이 있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며 수의사들은 잠바부대다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의복차림이 단정치 못해, 심지어 여름철에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거나 똥 묻은 운동화를 자랑삼아 신고다니는 회원을 보면 교육내용을 예절에 맞춰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듈다.

참가비 각출문제는 각 지부가 노력하여 보조금을

받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되 교육내용을 알차게 꾸려 나가는 것이 해결책일 것이다.

개업하면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수의사는 연수교육을 면제시켜야 하며, 고령의 수의사, 예를들면 만65세 이상의 수의사도 연수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의사에 맡기기해야 한다.

교육이수증(교육수료증)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고 사실상 각 도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절차다. 수의사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

고 등록명단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몇 음 말

경기도수의사회의 학술위원장으로서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생긴 불만의 소리를 모아 정리해 보았다. 중앙회에 전의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후에 금년도 수의사 연수교육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연수교육을 계획하는 각 지부별 학술위원회는 얼렁뚱땅 끝낼 욕심에 앞서, 신경을 써서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세워 회원들의 불평이 줄어들도록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임상수의사 개개인은 좋은 안건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연수교육계획에 적절 참여하여 봉

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임상수의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의이 옹호되며 윤리의식의 부활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경기침체가 하루라도 빨리 풀려 수의사와 축주들이 즐거워 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각 지부별 연수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임상수의사에겐 최소 3시간의 연수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관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중앙회가 지도·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면 연수교육의 생명은 장수 할 것이다.

마취상태에 있는 개의 위액 식도 역류

Gastro-oesophageal reflux during anaesthesia in the dog. Vet Records; 137(11), 479-482, 1995.

마취상태에서 산과 펩신 등의 역류는 식도염이나 구토, 이로 인한 음식찌꺼기 등에 의하여 연하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을 일으킬 수 있다. 마취시 G-E reflux의 빈도에 대한 시험에서의 사람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개에 대한 보고는 없다. 또한 다른 약물의 전처치나 절식기간에 따른 보고도 없다. 따라서 마취시 절식기간 및 진정제의 전처치시 reflux 빈도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240마리의 개에서 thiopentone으로 마취를 유도하고 역류(reflux)의 빈도와 역류된 물질의 pH를 측정하였다. 마취 유도후에 16.3% 개에서 역류가 일어났고 대부분 마취유도 이후 아주 짧게 일어났다. 역류된 내용물은 대부분 산성($pH < 4.0$)이었으나 10.3%는 알칼리성($pH > 7.5$)도 관찰되었다. pH가 4이하인 역류된 내용물중 54.3%가 pH 2.5 이하의 위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regurgitation은 한마리의 개에서만 관찰되었다.

Effect of preoperative fasting : 시술전 2~4시간 절식의 경우 역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12~18시간의 절식의 경우 30마리중 4마리에서, 24시간 이상 절식의 경우 30마리중 8마리에서 역류가 일어났다. 절식기간이 길수록 역류의 밀도는 높아지고 위의 산도도 증가되었다.

Effect of premedication : Diazepam (0.5mg/kg, I.V.), propionylpromazine (0.3mg/kg I.V.), pethidine (3mg/kg I.V.)를 전처치한 경우가 전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atropine과 xylazine 또는 atropine과 propionylpromazine을 병용하여 전처치하였을 경우보다 역류의 빈도가 낮았다. 마취유도후 역류의 빈도는 체중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G-E reflux의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수술전 2~4시간의 단기간 절식이나 진정제인 diazepam이나 propionylpromazine 전처치가 유효함을 알 수 있다(서울대학교 대학원 獣醫藥理學 專攻 韓成圭).